

직속기관 종합감사

2023년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5
2) 외부강의 등 겸직업무 수행 부적정	11
3) ○○ ○○○○ ○○○○ 관정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7
4) ○○○○ 지원 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무처리 부적정	21
5)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적정	25
6) 실험실 지정폐기물 관리 부적정	32
7)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편성 및 정산검사 부적정	38
8) 계약 업무 수행 부적정	4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3. 30. 부터 4. 5. 까지 5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4. 5.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1949년 3월 진주종묘장으로 시작,
1949년 12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으로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초전동)
- 주요업무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 스마트 농업의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우수 농업 기술 인재 양성

2. 기구 및 인력·예산 규모 (‘23년 기준)

- 기 구 : 2국 8과 6연구소
 - 총무과 / 연구개발국(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
 - 기술지원국(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
- 직 원 : 정원 150명 / 현원 144명
- 예산규모 : 67,870백만 원(국비 13,379, 균특 11,692, 도비 42,663, 기금 136)

3. 주요 현안 사업

- 현장요구 대응을 위한 ‘농업현장 분석민원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인 맞춤 동영상 제작’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6건(본처분 8, 현지조치 8)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20	8	8	4	37	-	5	32	8,792	8,792	-	-	-
처분요구	12	3	5	4	37	-	5	32	8,559	8,559	-	-	-
현지조치	8	5	3	-	-	-	-	-	233	233	-	-	-

※ '처분요구'에서 행정상 '통보 4건'과 '주의 4건'은 중복 집계로 순수 처분요구건수는 8건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외부강의 등 겸직업무 수행 부적정
- ○○ ○○○○ ○○○○ 관정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 지원 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무처리 부적정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적정
- 실험실 지정폐기물 관리 부적정
-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편성 및 정산검사 부적정
- 계약 업무 수행 부적정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매년 기간제노동자 채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0. 4. 20.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기간제노동자 894명을 채용하였다.

2. 공고기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채용절차) 제2항에 따르면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를 할 경우 초일을 불산입하여 최소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4.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6일간 공고하였다.

[표 1] 농업기술원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현황

연번	공고번호	공고기간	접수기간	실 공고기간	비고
1	2023-○○호	2023. 1.26. ~ 2. 1.	2. 2. ~ 2. 3.	6일	
2	2022-○○호	2022.11.30. ~ 12. 6.	12. 7. ~ 12. 8.	6일	
3	2022-○○호	2022. 8.30. ~ 9. 5.	9. 6. ~ 9. 7.	6일	
4	2022-○○호	2022. 7.19. ~ 7.25.	7.25. ~ 7.26.	6일	
5	2022-○○호	2022. 3.30. ~ 4. 5.	4. 6. ~ 4. 7.	6일	
6	2022-○○호	2022. 2.10. ~ 2.16.	2.16. ~ 2.17.	6일	
7	2021-○○호	2021. 5.31. ~ 6. 6.	6. 4. ~ 6. 7.	6일	
8	2021-○○호	2021. 4. 5. ~ 4.11.	4. 9. ~ 4.12.	6일	
9	2020-○○호	2020.12.18. ~ 12.24.	12.23. ~ 12.24.	6일	접수마감일 기준
10	2020-○○호	2020.10. 7. ~10.13.	10. 8. ~ 10.13.	6일	접수마감일 기준
11	2020-○○호	2020. 9. 1. ~ 9. 7.	9. 3. ~ 9. 7.	6일	접수마감일 기준
12	2020-○○호	2020. 7.21. ~ 7.27.	7.23. ~ 7.27.	6일	접수마감일 기준
13	2020-○○호	2020. 6.23. ~ 6.29.	6.25. ~ 6.29.	6일	접수마감일 기준
14	2020-○○호	2020. 5.13. ~ 5.19.	5.15. ~ 5.19.	6일	접수마감일 기준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채용서류 접수방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구직자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0. 4.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직접 방문접수만 받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공고를 하였고,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채용서류를 접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구직자의 직접 방문접수를 받으면서도 채용서류 접수를 위한 각종 경력 증명서 등 발급기간 및 채용서류 접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일이라는 짧은 접수기간을 공고하였고, 결국 이는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8회의 채용공고 중 세부 채용분야별¹⁾ 197회는 채용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았고, 14회는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재공고 미시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2022. 1. 6. 신설)」 제21조 (채용절차) 제4항에 따르면 소속부서의 장은 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기간제노동자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실과별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을 각각 공고하고 있음

그런데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2022. 1. 6.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6회 시행하면서 공고기간 동안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²⁾에도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응시한 인원을 합격시키는 등 기간제노동자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용하였다.

5. 과도한 자격 제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채용절차) 제2항에 따르면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응시자격으로 연령만 18세 이상, 학력·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채용계획서를 참조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서별 채용계획서에서는 채용부서별, 응시분야별 채용인원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적합여부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경력 가점 부여 등에 대해 심사한다고 공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격은 연령 외에는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1차 서류심사에서 자격증과 경력관련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를 하면서 해당 자격증과 인정되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여 구인자가 적합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세부 채용분야별 106회는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았고, 7회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었음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표 2]와 같이 2020. 4.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과, ○○○○○○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세부채용요건에 자격증, 경력 등을 중복 요구하여 과도한 응시 자격 제한을 주고 있어 기간제노동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하거나 미응시하는 분야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농업기술원 기간제노동자 자격요건 현황(예시)

부서명	응시자격	비고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하우스 작물(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생육조사 가능자 - 원예학, 농경제학, 통계학 전공자 - 컴퓨터활용능력, 빅데이터 분석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차량 소유자 및 운전 가능자 	
○○○○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병해충 실험(병원균 분리, 배양, 및 곤충사육, 표본제작 유경험자) - 작물보호학·생물학 전공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 광학현미경 사용 가능자 - 엑셀, 워드 등 컴퓨터 활용 자격증 소지 및 활용 가능한 자 - 병해충 조사·해충 사육, 접종 및 자료정리 가능한 자 - 생물통계 처리 및 작성 가능한 자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표 3]과 같이 서류심사 시 자격증과 경력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채용공고에는 구인자가 제출해야 할 자격증 종류와 가점이 인정되는 경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구인자가 가점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농업기술원 서류평가 가점 인정 내역

※ 자격증 가점 세부 기준(공무원 신규임용 자격기준 준용)		
구 분	국가기술포럼에 따른 자격증	배점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5점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축산	3점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식육처리	1점

※ 경력가점 세부 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24개월 이상	5점	* 인정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경력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4점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점	
6개월 미만	2점	
경력 없음	0점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는 감사 지적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야기된 문제 사항은 없었고, 감사 개시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요청하면서, 향후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공정한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등 기간제노동자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 ○○과 ○○○○○○ ○○○(현 ○○○○과), ○○과 ○○○○○○ ○○○(현 ○○○○관), ○○과 ○○○○○○ ○○○(현 ○○○○과), ○○과 ○○○○○○ ○○○(현 ○○○○○○과), ○○과 ○○○○○○ ○○○(현 ○○○○○○, ○○○○과)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 ②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기간 준수, 채용서류 접수방법 개선,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외부장의 등 겸직업무 수행 부적정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 관 기 관 (○○○○과, ○○○○○소, ○○○○○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장의 등 겸직활동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IX.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겸직허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복무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경상남도 인사과, 2019. 3.)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할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으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겸직허가 미이행 및 복무관리 부적정

그런데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 ○○○○○○○○ ○○○, ○○○○ ○○○ ○○○은 [표 1]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여 출강을 하면서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부서장의 외부강의 승인만으로 부적정하게 출강한 사실이 있으며, 출강을 하면서 연가 등을 내지 않고 출장을 내고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1] 겸직허가 미이행 및 복무관리 부적정 현황¹⁾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출강 연월일	출강 기관명	강의내용	강의료	복무관리		회수(원)	
								실제	적정	출장비	연가 보상비
1	○○ ○○과	○○ ○○ ○○ ○○ ○	○○○	'22.6.7. '22.6.30. '22.8.8. (3회)	○○○ ○○○○ ○○	○○○○ ○○○○ ○○○○	○○○○○○	출장 (○○)	연가	출장비 미수령	140,140 (86,247* 1일5시간)
2	○○ ○○과	○○ ○○ ○○ ○○ ○	○○○	'21.9.3. '21.9.13. '21.10.1. '21.10.29. '21.11.8. '21.11.22. (6회)	○○○○ ○○○○ ○○	○○○○ ○○○○ ○○○○	○ ○○○○○○	출장 (○○)	연가	출장비 미수령	447,480 (99,442 *4일 4시간)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1) ○○○ : 4시간(강의)+ 왕복 3시간*3일 = 13시간
○○○ : 3시간*6회+ 왕복 3시간*6일 = 36시간

나. 겸직허가 후 복무관리 등 부적정

지방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등을 내고 출장을 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 ○○소 ○○○○○○○○ ○○○ 등 2명은 출장을 내고 출장하였고, 일부 출장일에는 연가·외출·조퇴 또는 출장 조치도 없이 출장한 사실이 있다.

[표 2] 겸직허가 후 복무관리 부적정 현황

연번	부서명	직위(급)	성명	출강 연월일	출강 기관명	강의내용	강의 시간	강사료 (원)	복무관리		회수		
									실제	적정	출장여비	연가 보상비	
합계									3,153,920		209,800	2,944,120	
소계									665,540		209,800	455,740	
1	○○○○ ○○○	○○○○ ○○○	○○○	2021.10.07	○○○○ ○○○○	○○○○	4	○○○ ○○○	-	외출	62,200	59,590	
2	○○○○ ○○○	○○○○ ○○○	○○○	2021.10.14	○○○○ ○○○○	○○○○	4	○○○ ○○○		(관외 관내 등)	외출	62,200	56,590
3	○○○○ ○○○	○○○○ ○○○	○○○	2021.10.28	○○○○ ○○○○	○○○○	4	○○○ ○○○			외출	75,400	56,590
4	○○○○ ○○○	○○○○ ○○○	○○○	2021.11.05	○○○○ ○○○○	○○○○	8	○○○ ○○○	관내		연가	-	113,190
5	○○○○ ○○○	○○○○ ○○○	○○○	2021.11.19	○○○○ ○○○○	○○○○	8	○○○ ○○○		연가	-	113,190	
6	○○○○ ○○○	○○○○ ○○○	○○○	2021.11.26	○○○○ ○○○○	○○○○	4	○○○ ○○○		외출	10,000	56,590	
소계												2,488,380	
7	○○○○ ○○○	○○○	○○○	2021.3.10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8	○○○○ ○○○	○○○	○○○	2021.4.7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9	○○○○ ○○○	○○○	○○○	2021.4.21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10	○○○○ ○○○	○○○	○○○	2021.4.28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11	○○○○ ○○○	○○○	○○○	2021.5.12	○○○○ ○○○○ ○○	○○○○	2	○○○ ○○○	관내	외출	-	34,560	
12	○○○○ ○○○	○○○	○○○	2021.5.17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연 번	부서명	직위(급)	성명	출강 연월일	출강 기관명	강의내용	강의 시간	강사료 (원)	복무관리		회수	
									실제	적정	출장여비	연가 보상비
13	○○○○ ○○○	○○○	○○○	2021.5.26	○○○○ ○○○○ ○○	○○○○	3	○○○ ○○○	-	외출	-	51,840
14	○○○○ ○○○	○○○	○○○	2021.6.16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15	○○○○ ○○○	○○○	○○○	2021.6.23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16	○○○○ ○○○	○○○	○○○	2021.6.28	○○○○ ○○○○ ○○	○○○○	2	○○○ ○○○	관내	외출	-	34,560
17	○○○○ ○○○	○○○	○○○	2021.6.30	○○○○ ○○○○ ○○	○○○○	2	○○○ ○○○	관내	외출	-	34,560
18	○○○○ ○○○	○○○	○○○	2021.7.5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19	○○○○ ○○○	○○○	○○○	2021.7.7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20	○○○○ ○○○	○○○	○○○	2021.7.12	○○○○ ○○○○ ○○	○○○○	3	○○○ ○○○	-	외출	-	51,840
21	○○○○ ○○○	○○○	○○○	2021.7.14	○○○○ ○○○○ ○○	○○○○	2	○○○ ○○○	관외 (창원)	외출	-	34,560
22	○○○○ ○○○	○○○	○○○	2021.8.25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23	○○○○ ○○○	○○○	○○○	2021.9.1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24	○○○○ ○○○	○○○	○○○	2021.10.12	○○○○ ○○○○ ○○	○○○○	5	○○○ ○○○	-	외출	-	86,410
25	○○○○ ○○○	○○○	○○○	2021.10.19	○○○○ ○○○○ ○○	○○○○	5	○○○ ○○○	-	외출	-	86,410
26	○○○○ ○○○	○○○	○○○	2021.11.3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27	○○○○ ○○○	○○○	○○○	2021.11.12	○○○○ ○○○○ ○○	○○○○	5	○○○ ○○○	관내	외출	-	86,410
28	○○○○ ○○○	○○○	○○○	2021.11.23	○○○○ ○○○○ ○○	○○○○	2	○○○ ○○○	관외 (통영) 타행사	외출	-	34,560
29	○○○○ ○○○	○○○	○○○	2021.11.24	○○○○ ○○○○ ○○	○○○○	5	○○○ ○○○	관내	외출	-	86,410
30	○○○○ ○○○	○○○	○○○	2021.11.30	○○○○ ○○○○ ○○	○○○○	5	○○○ ○○○	-	외출	-	86,410
31	○○○○ ○○○	○○○	○○○	2021.12.1	○○○○ ○○○○ ○○	○○○○	2	○○○ ○○○	-	외출	-	34,560

연 번	부서명	직위(급)	성명	출강 연월일	출강 기관명	강의내용	강의 시간	강사료 (원)	복무관리		회수	
									실제	적정	출장여비	연가 보상비
32	○○○○ ○○○	○○○	○○○	2021.12.3	○○○○ ○○○○ ○○	○○○○	5	○○○ ○○○	-	외출	-	86,410
33	○○○○ ○○○	○○○	○○○	2021.12.8	○○○○ ○○○○ ○○	○○○○	4	○○○ ○○○	-	외출	-	69,120
34	○○○○ ○○○	○○○	○○○	2022.3.16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35	○○○○ ○○○	○○○	○○○	2022.4.6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36	○○○○ ○○○	○○○	○○○	2022.4.13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37	○○○○ ○○○	○○○	○○○	2022.4.20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38	○○○○ ○○○	○○○	○○○	2022.5.4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39	○○○○ ○○○	○○○	○○○	2022.5.18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40	○○○○ ○○○	○○○	○○○	2022.6.15	○○○○ ○○○○ ○○	○○○○	4	○○○ ○○○	-	외출	-	69,120
41	○○○○ ○○○	○○○	○○○	2022.6.22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42	○○○○ ○○○	○○○	○○○	2022.7.6	○○○○ ○○○○ ○○	○○○○	4	○○○ ○○○	관내	외출	-	69,120
43	○○○○ ○○○	○○○	○○○	2022.7.13	○○○○ ○○○○ ○○	○○○○	3	○○○ ○○○	관내	외출	-	51,840
44	○○○○ ○○○	○○○	○○○	2022.7.27	○○○○ ○○○○ ○○	○○○○	2	○○○ ○○○	관내	외출	-	34,560
45	○○○○ ○○○	○○○	○○○	2022.9.28	○○○○ ○○○○ ○○	○○○○	4	○○○ ○○○	관내 (09:40- 17:30)	외출	-	69,120
46	○○○○ ○○○	○○○	○○○	2022.9.28	○○○○ ○○○○ ○○	○○○○	3	○○○ ○○○		외출	-	51,840
47	○○○○ ○○○	○○○	○○○	2022.11.28	○○○○ ○○○○ ○○	○○○○	4	○○○ ○○○	-	외출	-	69,120
48	○○○○ ○○○	○○○	○○○	2022.11.30	○○○○ ○○○○ ○○	○○○○	4	○○○ ○○○	-	외출	-	69,120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자 판단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 등 3개부서는 감사지적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미래농업교육과 ○○○○○○ ○○○이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한 사항을 받아들여 퇴근시간 이후에 강의가 이루어진 37시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636,360원은 감액하고 환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출강하는 등 겸직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 ○○○○○○○소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②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연가 등으로 복무를 처리하지 않고 출장 등으로 출강하여 부적정하게 출장비,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3,102,1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 ○○○○ ○○○○ 관정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소)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소에서는 ○○ ○○○○ ○○○○의 생산 관리를 위한 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 ○○○○ ○○○○ 관정시설공사(이하 “관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표] ○○ ○○○○ ○○○○ 관정시설공사 추진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변경일자)	위치	사업량	계약액(원)		공사 기간	수급자 (시공사)
				당초	변경		
○○ ○○○○ ○○○○ 관정시설공사	'21. 4.27. ('21. 5.28.)	○○군 ○○면 ○○리 ○○○-○ 등 1필지	지하수 개발 및 시설 공사 1식	17,386,980	19,980,000	'21. 5. 3. ~ '21. 6. 9.	○○○○○○ 주식회사 대표자 ○○○

[출처 : 농업기술원 ○○○○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호 나목(공사 분야)에 따르면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2절 제2호 나목(공사 계약문서의 종류)에 따라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에는 설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1호 라목(공사현장 종사자)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에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는 계약문서(설계서)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2021. 5. 28. 계약상대자가 계획채수량 확보를 위하여 착정깊이를 당초 100m에서 140m로 변경한다는 실정보고(○○20○○-○○-○호)를 제출하자, 계약조건 및 설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가물량(내역)에 대한 산출근거(검측결과) 없이, 부적정하게 실정보고를 승인 및 설계변경(증액)하여 수급자(도급자)에게 부당하게 2,457,020원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증액금액(2,593,020원) - 환경보전비 등 미집행 경비 정산분(136,000원)

관정공사의 설계서(시방서)에는 [그림]과 같이 설계 깊이를 연장 천공하거나 2개소 이상을 착정하여 소요 채수량이 만족되면 공사비를 지불하되, 추가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층의 구분은 추정설계이므로 착정작업 시, 지질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검측을 통해 물량 산정의 근거로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정이 시행된 경우 수급인의 비용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림] ○○ ○○○○ ○○○○ 관정시설공사 시방서

<p>1.3.3 착정비용 가. 착정후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계획채수량에 미달된 폐공의 착정비용과 폐공처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설계깊이를 연장 천공하거나, 2개소 이상을 하여 소요채수량이 만족되면 공사비를 지불하되, 추가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p> <p>1.3.4 지층의 구분 가. 지층의 구분은 추정설계이므로 착정작업시, 지질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 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어야하며, 만약 수급인이 이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자의 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정이 시행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이 되어야 한다. 나. 암질판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봉인 후, 공사명의로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암석 물성시험(탄성파속도 및 내압강도시험)을 의뢰한다.</p>
--

[출처 : 농업기술원 ○○○○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관정공사의 착정 깊이 증가 및 감독자 검측결과에 의하지 않은 지층구분에 의한 변경 물량 반영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발주자 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해당 건과 유사 사업 추진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추진하겠으며, 부적정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받아 반납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관정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 ○○○○소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소 ○○○○○○관 ○○○(현 ○○○○과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② 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비 2,457,02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지원 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소)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소에서는 2022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 지원사업으로 청사내 유희부지 및 주차장,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표]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표] ○○○○ 지원 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추진 현황

구분	용역/공사 기간	위치 (용도지역)	사업량	계약액(원)	수급자
계	'22. 5. ~ '22. 11.			총사업비 1,000,000,000	
설계 용역	'22. 5. 2. ~ '22. 6. 30.	○○시 ○○구 ○○면 ○○리 ○○○-○ (농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156KW, 에너지저장장치 50KW 등 (청사내 주차장 767㎡, 옥상838㎡)	48,217,800	(주)○○○○ ○○
공사 (전기)	'22. 8. 16. ~ '22. 11. 13.			148,620,000 (관급자재 713백만원, 소방 등 별도)	(주)○○○○
감리 (전기)	'22. 8. 22. ~ '22. 11. 19.			42,029,190	(주)○○ ○○○○○

[출처 : 농업기술원 ○○○○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공작물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 제2호,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수평투영 면적이 150㎡ 이상인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준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관할 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용역사업의 감독·검사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의 적절 이행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호 다목(용역 분야)에 따르면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장 제9절 제1호 가목(준공 검사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에서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는 용역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과업지시) 및 계약문서 등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는 계약이행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청사내(농림지역) 1,60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2022. 5. 2.부터 2022. 6. 30.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행정절차 관련서류 및 업무대행에 관련된 용역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 지원사업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그림]과 같이 공사,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설계도서와 관련서류의 작성 및 업무의 대행이 명기되어 있어, 발주자인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 여부를 감독·확인하고 용역 준공전까지 필요 인·허가 서류를 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았어야 했고,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 지원사업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3. 과업의 범위

가. 화훼연구소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고단열 및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나.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의 편리성,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 미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 수립

※ 설계 우선 반영사항

- 연료전지, 태양전지, 축열탱크, 히트펌프, 에너지관리 모니터링 및 스마트팜 관제시스템, 나노망사 온실, 안개분무시스템 등

다. 공사,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설계도서와 관련서류의 작성 및 업무의 대행

라. 공사비 산출 및 시공계획 수립,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업무의 대행

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청이 설계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농업기술원 ○○○○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위 용역 계약사항(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내용 및 농림지역인 청사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미숙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청사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실무담당자 ○○○○소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소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② 청사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위법 상태가 해소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따라 2000. 6. 2. 진주시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후 [표 1]과 같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과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 내역

구분	폐수배출시설명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 처리방법	폐수 처리능력	비고
	2개 시설					
1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0m ³ /일	pH, BOD, TOC, SS, N-H(동)	생물학적처리	12.0m ³ /일	
2	이화학 시험시설	0.04m ³ /일	-	위탁처리	10.0m ³ /일 (저장시설)	'02. 7. 20. 변경신고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이화학 실험시설 세척 폐수 관리 부적정 및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2항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별표 14]에 따르면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 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근 등)를 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제16조(연구실안전관리수칙) [별표 11]에 따르면 시약을 취급한 기구나 용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폐수 집수조에 버리고 폐수 집수조는 저장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수탁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76조(벌칙) 및 제82조(과태료)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저장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는 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야 하고, 유입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2022년 기준 7,000여회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약 3,500리터/년¹⁾의 산과 알칼리류 등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세척 폐수를 저장시설에 유입하여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2] 2022년 ○○○○○○과 실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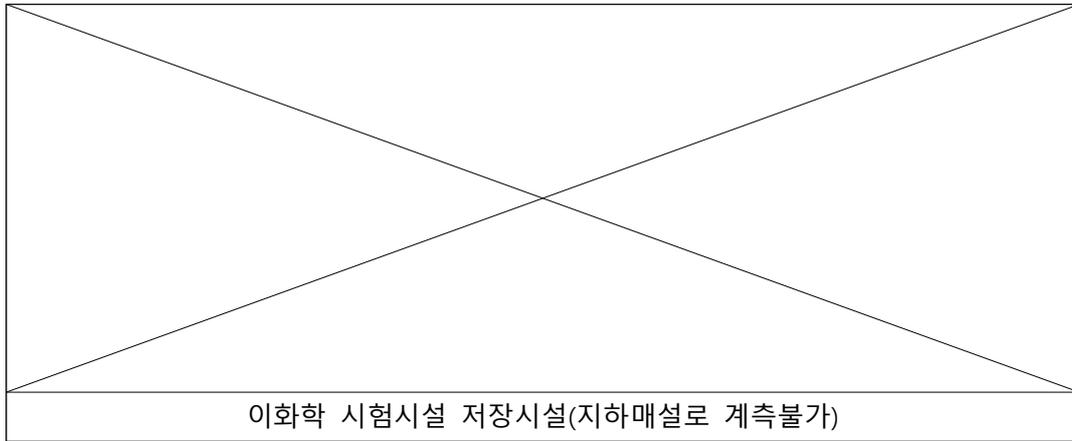
실험실명	건물명	1일 최대 실험종류(건수)	1년간 총 실험횟수(누적)
	계	53	7,275
○○○○○실	○○○○○○동	3	360
○○○○○실	○○○○○○동	3	360
○○○○○실	○○○○○○동	4	480
○○○○○실	○○○○○○동	2	240
○○○○○○○실	○○○○○○동	6	720
○○○○○○○○○실	○○○○○○동	1	120
○○○○○○○실	○○○○○○동	4	520
○○○○○실	○○○○○○동	4	260
○○○○○○○실	○○○○○○동	1	120
○○○○○○○실	○○○○○○동	3	260
○○○○○실	○○○○○○동	2	208
○○○○○실	○○○○○○동	2	208
○○○○○실	○○○○동	1	104
○○○○○실	○○○○○○○○	2	390
○○○○○실	○○○○○○○○	8	1,560
○○○○○실	○○○○○○○○	7	1,365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세척 폐수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은 [그림]과 같이 지정폐기물인 산폐수 저장시설로 사용하는 등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하고 있다.

1) 1회 실험당 초자류 세척폐수 발생량 약 500ml 산정

[그림] 이화학 시험시설 폐수 저장시설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제2항에 따르면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일지를 사실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중 소독방류조에 투입되는 약품에 대한 구매 및 사용내역은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이화학 실험시설에 대한 운영일지는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자 판단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물환경보전법」과 관련된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련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산과 알칼리류 등이 포함된 시약폐기물은 전량 성상별로 지정폐기물 통에 보관하여 처리하고, 용기에 묻은 시약을 세척한 '1차 세척수'는 폐수저장시설에 분리하여 보관하여 처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과의 토양, 수질, 식물체 분석민원 업무 특성상 산폐수 발생량이 많아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당시(2022. 6. 17.) 1차 세척수를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폐수저장시설'을 산폐수와 1차 세척수를 같이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3. 3. 30. ○○○○○○과 실험실 폐수관리 현장을 살펴본 결과 개수대 주변 어디에도 실험 1차 세척 폐수통을 비치한 실험실은 없었으며, ○○○○○○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자류를 세척할 수 있는 개수대는 임의 폐쇄하여 세척 폐수를 보관 해야하는 폐수 저장시설은 지정폐기물인 산폐수 저장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동 내 이화학 실험실의 경우 ○○○○○○동과 건물을 달리하고 있어 초자류 세척폐수 통이 필히 비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초자류 세척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통을 비치하지 않고 세척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 ○○○○국 9개 부서에서 연간 약 10,815회의 실험으로 4.56톤의 액상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였는데, 실험실 세척폐수 발생량을 단순 계산해도 약 5.5톤의 폐수가 발생해야 하고 폐유기용제, 폐무기용제, 알칼리 폐수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연간 7톤 이상의 지정폐기물이 발생되어야 한다.

또한, 폐수 저장시설을 산폐수와 세척수를 같이 저장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산폐수 저장시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의 성상별로 나뉘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산폐수와 1차 세척수를 함께 보관하는 것 또한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1차 세척수는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와의 폐수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과에서 주장하는 1차 세척수를 산폐수 저장 시설로 유입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폐수 저장시설로 사용해야 하는 저장시설을 산폐수 저장시설로 사용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것 또한 관련법 위반을 하고 있다.

이에 당해 사안은 업무성격상 단순·반복업무에 해당된다는 점, 실험실 환경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점, 경과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험실 안전 및 환경관리 책임자인 실무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①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등을 위반하여 실험실 발생 폐수 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 ○○○,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 ○○○○○○○과 ○○○○○○○○ ○○○,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② ○○○○○○과 내 이화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실험실 지정폐기물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국)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국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52개의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산, 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표 1] 농업기술원 실험실 현황

구분	부서명	실험실명	유해인자 사용시약	실험실 책임자	실험실 면적(m ²)	비고
	52개소				3,804	
1	○○○○과	○○○○실	-	○○○	45	
2	○○○○과	○○○실	에탄올, NaOH, ABA 등	○○○	65	
3	○○○○과	○○실	-	○○○	65	
4	○○○○○○과	○○○○○실	황산, 염산, 아세트산	○○○	26	
5	○○○○○○과	○○○○○실	-	○○○	26	
6	○○○○○○과	○○○○○실	-	○○○	26	
7	○○○○○○과	○○○○○실	황산, 염산, 아세트산	○○○	26	
8	○○○○○○과	○○○○○실	-	○○○	26	
9	○○○○○○과	○○○○○○○실	황산, 염산, 아세트산	○○○	104	
10	○○○○○○과	○○○○○실	아르곤, 산소, 질소, 헬륨	○○○	10	
11	○○○○○○과	○○○○○○○실	-	○○○	78	
12	○○○○○○과	○○○○○○○실	에탄올, 콜로로포름	○○○	71.5	
13	○○○○○○과	○○○○○실	에탄올, 콜로로포름	○○○	52	

구분	부서명	실험실명	유해인자 사용시약	실험실 책임자	실험실 면적(m ²)	비 고
14	○○○○○○○과	○○○○○○○실	아르곤, 산소, 질소	○○○	26	
15	○○○○○○○과	○○○○○○○실	농약	○○○	509	
16	○○○○○○○과	○○○○○실	에탄올	○○○	52	
17	○○○○○○○과	○○○○○실	에탄올, 이소아밀알코올, 염산	○○○	78	
18	○○○○○○○과	○○○○○실	-	○○○	19.5	
19	○○○○○○○과	○○○○○실	에탄올, 메탄올, hexan	○○○	52	
20	○○○○○○○과	○○○○○실	에탄올	○○○	26	
21	○○○○○○○과	○○○○○실	에탄올	○○○	26	
22	○○○○○○○과	○○○○○실	에탄올	○○○	99	
23	○○○○○○○과	○○○○○실	아세트산 아세톤, 염화칼슘, 클로로포름	○○○	20	
24	○○○○○○○과	○○○○○실	퀘세틴, 갈산, 질산알루미늄, 페놀	○○○	65	
25	○○○○○○○과	○○○○○실	질산은, 붕산, 폼알데하이드, 황산	○○○	64	
26	○○○○○○○과	○○○○○실	아세톤,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에틸 에테르	○○○	55	
27	○○○○○과	○○○○○○○실	에탄올(70%), 이소프로필알콜, 차아염소산나트륨	○○○	87.9	
28	○○○○○과	○○○○○실	-	○○○	52.8	
29	○○○○○과	○○○○○실	에탄올(70%), 수산화나트륨(1%), 탄산칼슘, 차아염소산나트륨	○○○	46.3	
30	○○○○○과	○○○○○실	에탄올(70%), 차아염소산나트륨	○○○	56.7	
31	○○○○○소	○○○○○실	에탄올,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퀘르세틴	○○○	142.9	
32	○○○○○소	○○○○○실	염산, 메탄올, Isopropylalcohol, hloroform, Isoamylalcohol	○○○	142.9	
33	○○○○○소	○○○○○실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	○○○	47.6	
34	○○○○○소	○○○실○	-	○○○	34.6	
35	○○○○○소	○○○실○○○	아세토니트릴, 메탄올, 황산, 톨루엔	○○○	92.2	
36	○○○○○소	○○○실○○○	-	○○○	62	
37	○○○○○소	○○○실○○○	-	○○○	138.2	
38	○○○○○소	○○○실○○○	메탄올, 아세톤 등	○○○	60	
39	○○○○○소	○○○○○○○실	에탄올, 염화수소, 질산	○○○	150	
40	○○○○○소	○○○○○실	에탄올, 염화수소, 질산	○○○	100	
41	○○○○○소	○○○○○실	에탄올, 자외선	○○○	150	
42	○○○○○○○소	○○○○○실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포름산	○○○	64	
43	○○○○○○○소	○○○실	에탄올	○○○	24	
44	○○○○○○○소	○○○○○실	황산, 과염소산, 페놀	○○○	24	
45	○○○○○○○소	○○○○○실	세척제	○○○	153	
46	○○○○○○○소	○○○○○실	에탄올, LN2	○○○	48	
47	○○○○○○○소	○○○실	에탄올, UV	○○○	24	
48	○○○○○○○소	○○○○○실	아세토니트릴, 에탄올, 메탄올	○○○	48	
49	○○○○○○○소	○○○○○○○실	메탄올, 아세트로니트릴 등	○○○	78.7	
50	○○○○○○○소	○○○○○실	메탄올, 아세톤 등	○○○	92.2	
51	○○○○○○○소	○○○실○	에탄올,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	86	
52	○○○○○○○소	○○○실○	에탄올	○○○	86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란”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 5]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는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폐농약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정한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화학폐기물(지정폐기물) 수집 용기는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기 외부에는 사용한 부서명과 장소, 전화번호,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특정폐기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되고, 빈 시약병은 파손되지 않도록 기존 상자에 넣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1) 지정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질 등

따라서 농업기술원 ○○○○국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국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표 2]과 같이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021년 6.8톤, 2022년 6.02톤을 처리하면서도 보관기간 45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표 2]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구분	폐기일자	품목	수량(kg)	폐기물 처리비용(원)	비고
	6회		12,885	41,080,650	
2	'21.11.15.	유기용제 액상(혼합)	6,223	14,203,200	3톤 이상 배출로 보관기간 45일 미준수
		유기용제 고상(혼합)	1		
		유독물질 액상(혼합)	464		
		유독물질 고상(혼합)	177		
3	'22. 5. 2.	유기용제 액상(혼합)	220	996,800	
4	'22. 5. 4.	유기용제 고상(혼합)	40		
		유독물질 액상(혼합)	940		
		유독물질 고상(혼합)	230		
5	'22.11.23.	유기용제 액상(혼합)	1,600	19,060,650	
		유기용제 고상(혼합)	80		
		유독물질 액상(혼합)	740		
		유독물질 고상(혼합)	1,110		
6	'22.11.23.	유기용제 액상(혼합)	620	6,820,000	
		유독물질 액상(혼합)	440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그림]와 같이 지정폐기물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거나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한 복도에 폐기물 보관 통을 보관하고 있고, 전용 폐기물 보관통이 아닌 기존 시약병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현황

시약병으로 지정폐기물 보관	시약병으로 지정폐기물 보관	보관장소 부적정
보관장소 부적정	보관장소 부적정, 표지부착기준 위반	보관장소 부적정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농업기술원 ○○○○국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 ○○○정, ○○○○○○○과 ○○○○○○○○ ○○○, ○○○○○○○과 ○○○○○○○○ ○○○, ○○○○○○○과 ○○○○○○○○ ○○○, ○○○○과 ○○○○○○○○ ○○○, ○○○○소 ○○○○○○○○ ○○○, ○○○○소

○○○○○○○○ ○○○, ○○○○소 ○○○○○○○○ ○○○, ○○○○소
○○○○○○○○ ○○○, ○○○○○○○소 ○○○○○○○○ ○○○, ○○○○
○○소 ○○○○○○○○ ○○○, ○○○○○○○소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 ②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편성 및 정산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농업기술원(○○○○과, ○○○○과)
조 치 기 관 농업기술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농업기술원 ○○○○과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 등에 따라 안심농 참여농가의 지속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에게 [표 1]과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1]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급내역

연도	사업명	내 용	사업비(천 원)		
			계	도비	자부담
계			100,337	61,950	38,387
2020	○○○ 안내 홍보용품 지원	○○○○○구입 등	37,900	21,000	16,900
2021	○○○ 홍보물품 지원	○○○○○○ 상세페이지 및 스틸컷 제작	33,200	21,000	12,200
2022	○○○ 홍보물품 지원	○○○ 참여 농가 홍보용 박스 및 비닐 봉투 제작지원	29,237	19,950	9,287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경남농업기술원 ○○○○과에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본부)에게 [표 2]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본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급내역

연도	사업명	내 용	사업비(천 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273,000	39,000	234,000	-
2020	○-○도본부 교육행사지원	○○○○○○○-○ 디지털 페스티벌 등	10,000	5,000	5,000	-
	○-○ 양성교육	○○○-○연합회 임원 지도력 배양	16,000	8,000	8,000	-
	○○○○○○○○ 조직활동지원	경남 ○○○○○○○○ 홍보책자지원 등	45,000		45,000	-
	○○○-○대상 지원	제40회 ○○○-○대상 시상 시상품 지급	10,000		10,000	-
2021	○-○도본부 교육지원	청년○-○라이브 커머스 행사 등	26,000	13,000	13,000	-
	○○○○○○○○조 직활동지원	○○○-○회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등	60,000		60,000	-
	○○○-○대상 지원	제41회 ○○○-○대상 시상품 지급	10,000		10,000	-
2022	○-○도본부 교육지원	청년○-○ 및 대학○-○ 양성교육 등	26,000	13,000	13,000	-
	○○○○○○○○조 직활동지원	○○○-○ 조직활성화 및 홍보지원 등	60,000		60,000	-
	○○○-○대상 지원	○○○-○대상 시상품 지급	10,000		10,000	-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과목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제3항에 따르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0~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3호 별표 11 기타 보상금(301-12)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제7항에 따르면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등과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서 계약하여야 하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과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념품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지방계약법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누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편성하여 매년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지정정보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표 3]과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7,541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3]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연도	사업명	1인 수의계약 내용			최대 절감가능액 ¹⁾
			품목	수량(개)	금액	
	계			131	62,840	7,541
1	2020	○○○ 홍보용품 지원사업	○○○○○	76	35,340	4,241
2	2021	○○○ 홍보용품 지원사업	○○○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제작	55	27,500	3,300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예산과목 편성 등 부적정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민간단체(○○○-○본부)에게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표 4]와 같이 ○○○-○ 대상 시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를 지출하지 못함에도 3년간 시상품 30,000천 원을 구입하도록 지원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견적에 의한 물품·용역의 수의계약”의 낙찰하한가는 88%로 명시

[표 4] ○○○-○대상 시상품 구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한 내역

연도	사업명	시상내용 ²⁾	사업비(천 원)		
			계	도비	자부담
계			30,000	30,000	
2020	○○○-○대상 지원	○○○-○대상 시상품지급(14점)	10,000	10,000	-
2021	○○○-○대상 지원	○○○-○대상 시상품지급(14점)	10,000	10,000	-
2022	○○○-○대상 지원	○○○-○대상 시상품지급(13점)	10,000	10,000	-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다. ○-○ 임직원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시정조치 등 정산검사 부적정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민간단체(○○○-○본부, 전 시군 ○○임원으로 구성)가 [표 5]와 같이 2020년 청년농업인 ○-○ 디지털 페스티벌 농산물 꾸러미 재료를 ○○○○○(대표 : ○○○)를 통해 구입하였으나, 해당 ○○○○○는 ○-○ ○○군 ○○장이 운영하는 임직원 사업체로서 계약체결이 불가한 업체임에도 정산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5] 2020년 ○○○○○○-○디지털 페스티벌 재료비 구입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계약업체(대표자)	집행내역		총사업비
			품목	금액	
2020	2020년 청년농업인 ○-○ 디지털페스티벌 재료 구입비 지급	○○○○○(○○○)	계	3,000	10,000 (국비+도비)
			유기농쌀	300	
			단감	300	
			매실엑기스 등	1,900	
			누렁지	500	

[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20년 ○○○○○○-○ 디지털 페스티벌 이벤트 응원 댓글에 추천된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된 농산물꾸러미(80세트, 개당 3만원 정도)에 대해 지급관리 대장이 없음에도 정산 시 확인 및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대상 수상자 시상품(○○○, ○○○○○, ○○○, ○○○ 등)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자 판단

① 지방계약법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누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사업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예산과목 편성 등 부적정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사업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지원사업은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 및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조례」에 따라 ○○○○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시상품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 교육행사(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시상품은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보조금심의 및 성과평가를 거친 사업으로 청소년 후계 인력육성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경상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 되어 있고, 시상품(○○○, ○○○○○ 등)은 자본적 경비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301-14)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므로 농업기술원 ○○○○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 임직원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시정조치 등 정산검사 부적정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디지털 페스티벌 농산물 꾸러미 구입은 업무연찬 및 인지부족으로 임직원 사업체에 대한 계약체결과 지급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고, 정산 시 확인 및 시정 조치하지 않았으며, 향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사업자 교육 및 업무연찬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등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정산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합니다.(**훈계**)

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등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과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등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③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등을 위반하여 임직원 사업체와 계약 체결한 보조사업자에게 **3,000천 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계약 업무 수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과, ○○○○○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1] 내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고 한다) ○○○○○과, ○○○○과, ○○○○○과에서는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등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

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¹⁾ 제5장 제3절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표 1]과 같이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로 시행²⁾하고 있다.

[표 1] 금액기준 1인 견적 수의계약 집행기준(경상남도)

구분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비고
도자체기준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도본청, 도의회,
지방계약법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직속기관, 사업소 적용

[출처 : 경상남도 회계과 공문(회계과-52593, 2021. 11. 18.)]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 본 내용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간(2020. 4. 1. ~ 2023. 4. 5.) 중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금액기준 1인 견적 수의계약 집행기준 알림”이라는 공문명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로 통보한 바 있음

따라서 농업기술원 ○○○○과, ○○○○○○과에서는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일 사업에 대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2020. 4. 1.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2]와 같이 2건의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각각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시기적으로 5회 나누어 1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2]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통합 발주 시				실제 계약				
연번	사업내용	(최대) 절감액 ³⁾	적정 계약방법	계약명	품의일자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2건	2,602,278		5회		38,576,520		
1	○○ ○○○○○ 재료구입	802,278	2인견적 수의계약	○○ ○○○○ ○○재료 구입	2022.06.10	7,052,000	○○ ○○○	1인견적 수의계약
				○○ ○○○○ ○○ ○○ 16종 구입	2022.06.14	6,924,520	○○ ○○○	1인견적 수의계약
				○○ ○○○○ ○○재료 구입	2022.06.16	4,800,000	○○ ○○○	1인견적 수의계약
2	○○○○ ○○○○○ ○○○ 구입	1,800,000	2인견적 수의계약	○○○○ ○○ ○○○○ ○○ ○○ 구입	2022.04.18	9,900,000	○○○	1인견적 수의계약
				○○○○ ○○ ○○○○ ○○ ○○ 구입(2차)	2022.05.09	9,900,000	○○○	1인견적 수의계약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2020. 4. 1.부터 2023. 4. 5.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3]과 같이 2년간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각각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를 시기적으로 17회 나누어 1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3]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내역

(단위 : 원)

회계연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적정 계약방법	(최대) 절감액 ⁴⁾
합계	17회	41,277,500				4,585,350
2022	○○○○ ○○ ○○ ○○○ ○○○○○○ 구입(9건)	22,880,000	(주)○○○○○○○, ○○○○(주)	1인견적 수의계약 (시기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2,745,600
2021	○○○○ ○○ ○○ ○○○ ○○○○○○ 구입(8건)	18,397,500	(주)○○○○○○○, ○○○○(주)	1인견적 수의계약 (시기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1,839,750

*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세부내역 별첨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상기 [표 2] 및 [표 3]과 같이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통합 발주를 하거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최대 7,187,628원의 예산을

3) 개별 계약 품의 금액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2인 견적에 의한 물품 수의계약” 낙찰하한가 90%(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를 곱하여 모두 더한 값

(단위 : 원)

계약명	품의금액 (A)	낙찰하한가 (B)=(A)*90%	실제계약액 (C)	(최대)절감가능액 (D)=(C)-(B)
○○ ○○○○○ ○○재료 구입	7,558,400	6,802,560	7,052,000	249,440
○○ ○○○○○ ○○ 재료 16종 구입	7,467,980	6,721,182	6,924,520	203,338
○○ ○○○○○ ○○재료 구입	4,945,000	4,450,500	4,800,000	349,500
○○○○ ○○ ○○○○ ○○ ○○ 구입	10,000,000	9,000,000	9,900,000	900,000
○○○○ ○○ ○○○○ ○○ ○○ 구입(2차)	10,000,000	9,000,000	9,900,000	900,000

4) 개별 계약 품의 금액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2인 견적에 의한 물품 수의계약” 낙찰하한가를 2022년의 경우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2021년의 경우 90%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를 곱하여 모두 더한 값

절감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⁶⁾ 제14장 제2절 “1. 계약문서”에 따르면 용역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예규 제5장 제3절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⁷⁾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도 계약담당자는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견적에 의한 물품 수의계약”의 낙찰하한가는 88%로 명시(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의 경우 90%)되어 있음

6)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7)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유(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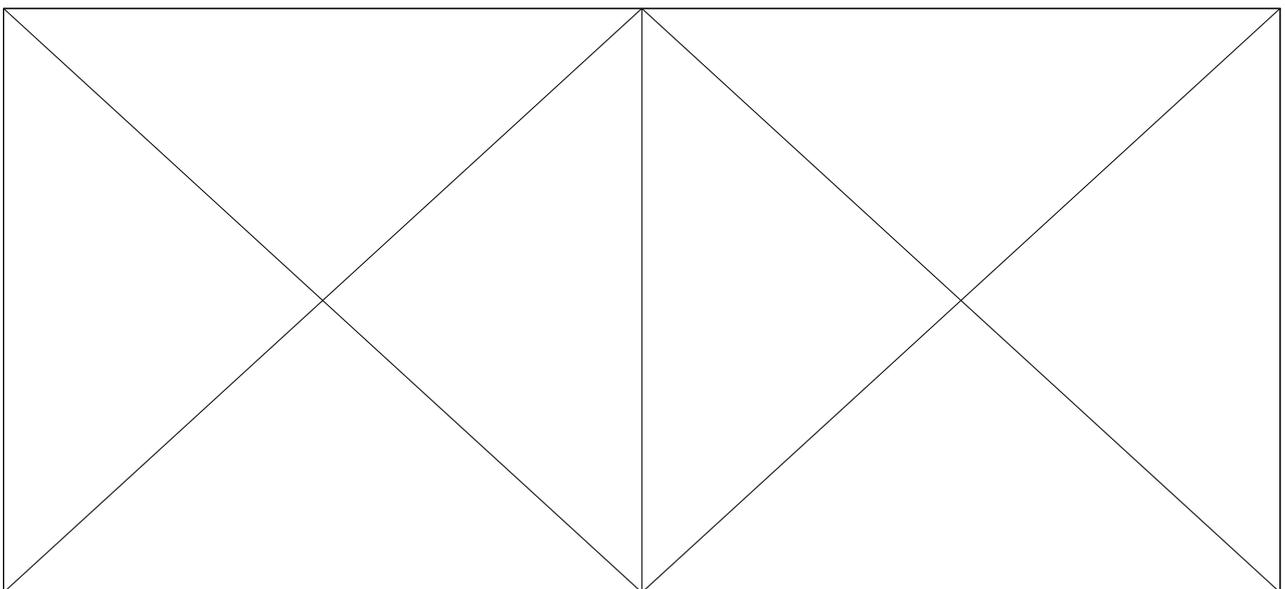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른 표준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과에서는 2022. 4. 22. ○○○○○ 위·수탁 처리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관계 법령상 표준계약서가 아닌 업체가 제공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⁸⁾하였고,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제반 서류 또한 일체 구비하지 않았다.

[그림 1] ○○○○○ 위·수탁 처리계약서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8) 업체가 제공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22. 4. 22. ~ 2023. 4. 21.까지이고 계약금액은 별도 기재하지 않은 채 회당 ○○○○○ 운반비를 200,000원으로만 명시하였으며, 2023. 4. 5. 감사일 현재 까지 해당 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200,000원임(1회, 지급일자 2022. 8. 25.)

그리고 상기 [그림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당시 [표 4]와 같이 관계 법령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제한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

[표 4]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사업체)

연번	성명	생년월일	관계	의원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1	○○○	○○○○. ○○. ○○.	본인	○○○	(주)○○○	○○○-○○-○○○○○	98%
2	○○○	○○○○. ○○. ○○.	본인	○○○	(주)○○○○○○○	○○○-○○-○○○○○	98%

[출처 : 경상남도 회계과 공문(회계과-50970, 2021. 11. 08.)]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계약업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였고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문사항 등은 회계과 등 관련기관 등에 문의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 업무 수행을 부적절하게 한 실무담당자 ○○○○과 ○○○○○○○○ ○○○, 실무담당자 ○○○○○○○과 ○○○○○○○○ ○○○, 실무담당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은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